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704호 2020. 12. 17.(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24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1725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

○ 사천시 조례 제1726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727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사천시 조례 제1728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7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사천시 조례 제1730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731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사천시 조례 제1732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59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1

○ 사천시 규칙 제760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48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4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 50
○ 사천시 고시 제4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사항 고시 ------- 51
○ 사천시 고시 제413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 52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570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 71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04호

사천시 조례 제17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7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사천시 물품 관리조례」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3조(「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4조(「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

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6조(「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7조(「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재무회계규칙 및 다음 각호에 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8조(「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9조(「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사천시 주택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의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쓴다”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사천시 건축조례」의 개정)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7조”로 한다.

제12조(「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쓴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7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제 1 장 총 칙” 을 “제1장 총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제5항”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급” 을 “전달”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가구 부터” 를 “20가구부터” 로, “구성한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락형태” 를 “취락 형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개반

부터” 를 “3개반부터”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락형태” 를 “취락 형태” 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 2 장 이·통장” 을 “제2장 이·통장”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각종” 을 “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 으로 하고, 같은 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복구 등 지원

제5조제2항 중 “복종하여야” 를 “따라야”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이외의 목적에” 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한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3조의 2의 규정을” 을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의2를”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통장의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월정수당(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보상금
3. 설, 추석,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는 위문품 및 기념품
4. 현장 활동비
5.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6. 모범 이·통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② 이·통장이 변경 임명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월정수당 및 제1항4호의 현장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임명된 이·통장에게 지급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통장”을 “읍·면·동장은 이·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 중 “공무이외”를 “공무 이외”로, “시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필요시”를 “필요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질”를 “해임”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 3 장 반 장”을 “제3장 반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를 “주민여론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원공동”을 “반원 공동”으로,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를 “행정 지원사항의 공정한 처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반내”를 “반 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무이외의 목적에”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을 “주민에게 알려야 할”으로, “사항의 처리를 위해”를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내”를 “반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필요시”를 각각 “필요할 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반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의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통”을 “반”으로, “이·통장”을 “반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제 4 장 보 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7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12.17.>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종 천 리	종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홍 사 리	홍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항 리	중항리 일원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림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랑 리	구랑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대방동에서 서동으로 편입된 지번(141-1, 141-2, 141-9, 141-10, 142-1, 142-2, 142, 143-3, 143-4, 143-5, 144-1, 144-3, 144-4, 144-5,**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144-6, 146-2, 146-4, 146-6, 146-7, 146-8, 146-9, 146-10, 146-11, 148-2, 148-3, 148-4, 148-5, 149-1, 149-2, 149-3, 150-3, 750-1, 750-2) 제외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 선구동에서 동금동으로 편입된 지번(14-1, 14-2, 14-3, 14-4, 14-6, 14-8, 14-11, 14-12, 14-14, 14-15, 14-16, 14-17,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30, 14-32, 14-33, 14-34, 14-35, 14-38, 14-39, 15-4, 331-2, 331-3, 333-4) 제외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벌 용 동		벌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 벌리동에서 용강동으로 편입된 지번(7, 7-3, 8, 573) 제외 · 용강동에서 벌리동으로 편입된 지번(663-2, 663-3, 800-9, 890-4, 915-15, 916-1, 917-1, 917-3) 제외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 신벽동에서 노룡동으로 편입된 지번(산44-2, 산44-3, 산44-4, 산44-5, 산44-8, 산45-2, 산45-6) 제외 · 노룡동에서 신벽동으로 편입된 지번(487-10, 487-13, 488-10, 488-11, 488-13, 산6-15, 산6-16, 산7-1, 산8-4, 산11-8, 산22-3, 산22-4) 제외 · 대포동에서 노룡동으로 편입된 지번(147-3) 제외

사천시 조례 제17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 성적이 직전 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본다.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1호 단서의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따른다.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② 장학생은 이·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분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라 일시 지급한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2학기 개시 전일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50%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모가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12.17.〉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

1. 총점 배분

합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통장 경력	이·통장 상훈	가산점(항목당 5점)
100	60	30	10	1. 수급자 여부 2. 다자녀(3명 이상) 가구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고등학생	상위 10% 이내	10% 초과 20% 이내	20% 초과 30% 이내	30% 초과 40% 이내
		평균 석차 1등급	평균 석차 2등급	평균 석차 3등급	평균 석차 4등급
	대학생	A^0 이상	A^-	B^+	B^0, B^-
예·체능, 또는 기능분야		국가(청소년)대표급, 각종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 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 교육감 표창 수상자	시의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	시·군 단위 대회 입상자
점수		60	50	40	30

※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석차로 한다.

나. 이·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0	28	26	24	22	20

다. 이·통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상훈 없음
점수	10	9	8	7	5

라. 가산점: 항목별 5점

항목	수급자 여부	다자녀(3명 이상)가구
점수	5	5

※ 수급자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사천시 조례 제17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59명”을 “964명”으로 하고, “각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원:942명”을 “정원: 94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0.12.1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64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933	-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874	-						
별정직 계	-	-						
6급 상당	-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사천시 조례 제17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원활이”를 “원활히”로 한다.

제7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7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계약”을 “협약”으로, “금융기관을”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 지정하는”을 “시장에게 등록한”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 하게”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를 “대행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
2. 카드상품권
3. 모바일상품권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및 사용지역

2. 유효기간 및 발행인

3.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수수료

2.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행단체는”을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대행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대행단체의 의무 및 협조사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방법은 제2항과 같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환전 및 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고,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금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포상금·수당 등”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할일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판매대행점에 보전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17.>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스티커교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17.>

사천 - 호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17.>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폰 :)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17.>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17.>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

1. 사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인 수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건 수	발행액	건 수	판매액	건 수	보유액
계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2. 사천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천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명칭: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17.>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사천시 조례 제17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를 “다만, 위촉직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칙 제75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사람”을 “학생”으로,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17.>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면>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이·통장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연 락 처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훈격	수상일자	공적분야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학년/반 학년/학과	학년/ 반 학년/ 학과	보호자와의 관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성적 또는 특기개요	

3. 추가 기재사항

타 장학금 수혜여부	없음( )		
	있음( )	• 장학금 종류: • 수혜금액:	• 수혜기간:

가 산 점	수급자 여부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여부

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제출서류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여부: 수급자 증명서,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소속: 이·통장의 주소지 해당 읍·면·동을 기재함

③ 직위: 이·통장 직위를 기재함

④ 이·통장 경력: 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이·통장 연속근무기간을 기재함

※ 불연속적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불가

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기재

⑥ 주 소: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재함

⑦ 계좌번호: 장학생으로 선발 시 장학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기재(이·통장 또는 자녀 계좌)

⑧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5년 이내 시장 이상의 상훈 수상내역을 기재하되, 상위 1개 상훈 수상내역만 기재

⑨ 성적 또는 특기개요

-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평균 석차 또는 석차등급을 기재하고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함

⑩ 타 장학금 수혜여부: 정부 또는 타 기관, 단체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재하고, 타 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간, 지급금액을 기재함.

※ 수령여부 및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

⑪ 가산점

㉮ 수급자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여부: 3자녀 이상 산정 시 입양자녀 포함

<개정 2020.12.17.>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장학생 추천서

1. 장학생 인적사항

(고등학생 추천용)

학 교 명		학 년 / 반	학년/ 반	보 호 자 성 명	
성 명 (한 자)	( )	생 년 월 일	. . .	성 별	
주 소					

2. 성적 또는 특기 개요

교 과 성 적 평 균		학 년 석 차	명/ 명	평 균 석 차 등 급	
대 표 종 목		종 류		대 표 기 간	
대 회 명		입 상 내 역 (훈 격)		입 상 일 자	

3.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직 인

사천시장 귀하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① 본 추천서는 고등학교 장학생인 경우 작성합니다.
② 교과 성적 평균은 직전 학년의 평균 성적을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석차를 기재합니다.
③ 학년 석차는 직전 학년의 재적학년 정원에 대한 석차를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석차를 기재합니다.
④ 대표종목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⑤ 종류는 국가(청소년)대표, 시·도 대표, 시의 대표를 기재합니다.
예)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 경상남도 대표, 사천시 대표
⑥ 대표기간은 해당 대표로 활동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대회명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에 참가하여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대회명을 기재합니다.
⑧ 입상내역은 ⑦대회에서 입상내역을 기재하며, 이 경우 3위 이상으로 입상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⑨ 입상일자는 ⑧에 수상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추천대상자

① 성적 우수자
- 고등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의 교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 또는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함.

②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③ 추천 제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개정 2020.12.17.>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이·통장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연 락 처	
주 소					

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년/반 학년/학과	학년/ 반 학년/ 학과	보호자와의 관 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 . . (남, 여)	추천분야	1. 성적우수자 2. 기능 및 예·체능 우수자
주 소					

3. 읍·면·동장 의견

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 인

사천시장 귀하

사천시 규칙 제76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준용)”을 “(관계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고시 제 2020-4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17.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9-13호(2019. 12. 31.)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 성 명 : 문두순
   - ○ 주 소 : 진주시 새들말로 22번길 9-3
3. 공사 내용
   - ○ 주택단지 형성을 위한 포락지 복구 공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20-27 외 1필지선 공유수면
5.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 2020. 12. 07.

사천시 고시 제2020-4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17.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0-10호 (2020. 11. 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 접안시설 및 도교 설치 1식(하봉항 부잔교 설치 공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181번지선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12.14.

사천시 고시 제2020-413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256호(2020. 07. 16.)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0. 12. 17.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향촌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나. 면　적 : 68,66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당초 2016. 7. 28. ~ 2020. 12. 31.

변경 2016. 7. 28. ~ 2021. 06. 30.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다.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등 준공인가 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 연장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유치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폐수 발생시설 제외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나.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나. 소유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소유권 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
산업시설용지		43,803	63.8	-
공공시설용지		23,305	33.9	-
	도 로	11,150	16.2	1개소
	주 차 장	1,615	2.4	1개소
	공 원	1,475	2.1	1개소
	완 충 녹 지	70	0.1	1개소
	경 관 녹 지	8,995	13.1	1개소
기타시설용지		1,553	2.3	
	녹 지	1,553	2.3	1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24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3) 녹지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9,065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8,99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4) 공원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7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5) 상수도계획

○ 용수량

구 분	용 수 수 요 량 (㎥/일)	비 고
계	153	・용강배수지에서 공급
생활용수	21	
공업용수	132	

6) 오수처리계획

○ 오수량

구 분	오수량(㎥/일)	비 고
계	134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공 업 오 수	119	
생 활 오 수	15	

7) 에너지공급계획

○ 전 력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변압기 최대부하(kW)	비 고
계	3,020	818	한국전력공사 협의
산업시설용지	2,966	17	
기타 시설용지	54	835	

○ 연료공급계획

구 분	직접열 연료수요량			간접열 연료수요량			비고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천N㎥/년	toe/년		천N㎥/년	toe/년	
산업시설용지	1,265	121	127	2,055	192	201	
합 계	1,265	121	127	2,055	192	201	

9) 통신공급계획

구 분	소요회선(회선)	비 고
여유율 20% 감안	23	(주)KT에서 신규 통신시설 공급
계	19	
산업시설용지	19	

10)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발생량(kg/일)	비 고
계	55,138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 배출폐기물	30,660	
사업장 지정폐기물	24,478	

9.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27,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주1)]	기타비용[주2)]
총 사업비	**27,400**	23,600	1,100	1,200	1,500

주1) 감리비 : 공사비, 설계비의 6%
주2) 기타비용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의 5%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비고
계		**27,400**	**2,100**	**6,900**	**11,000**	**7,400**	-
공 사 비		23,600	1,000	5,700	11,000	5,900	-
설계비	설계비	1,100	1,100	-	-	-	-
	감리비	1,200	-	1,200	-	-	-
기타비용		1,500	-	-	-	1,5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해당없음

11. 에너지 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 업종배치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획면적(㎡)	비 율(%)
계		43,803	100.0
산업1-1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8,155	18.6
산업1-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9,143	20.9
산업1-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10,894	24.9
산업1-4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5,112	11.7
산업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6,815	15.5
산업1-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3,684	8.4

※ 입주예정기업 : 제일조선소, 삼성조선소, 에이치케이조선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
처분대상용지	소 계	43,803	63.8	-
	산업시설용지	43,803	63.8	실수요자 분양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 계	24,858	36.2	
	도 로	11,150	16.2	사천시 무상귀속
	주 차 장	1,615	2.4	〃
	공 원	1,475	2.1	〃
	완 충 녹 지	70	0.1	〃
	경 관 녹 지	8,995	13.1	〃
	녹 지	1,553	2.3	〃

15.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 해당없음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도시 지역	계	68,661	100	
	일반공업지역	68,375	99.6	
	자연녹지지역	286	0.4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93	11,150	-	-	-	-	-	-	1	793	11,150
소로	-	-	-	-	-	-	-	-	-	-	-	-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24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9,065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8,99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7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6	향촌2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68,661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
산업시설용지		43,803	63.8	-
공공시설용지		23,305	33.9	-
	도 로	11,150	16.2	1개소
	주 차 장	1,615	2.4	1개소
	공 원	1,475	2.1	1개소
	완 충 녹 지	70	0.1	1개소
	경 관 녹 지	8,995	13.1	1개소
기타시설용지		1,553	2.3	
	녹 지		2.3	1개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7 - I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43,803			43,803	
산업	산업1	43,803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155	
			2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143	
			3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0,894	
			4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5,112	
			5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6,815	
			6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684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1,615			1,615	
주	주1	1,615	-	사등동 산35 일원	1,615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 1-1~ 산업 1-6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배 치		· 건축배치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강조색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주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1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사업

2) 명 칭 :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23,305㎡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중로 3-24호선	L=793m, B=14m, A=11,150㎡	
주 차 장	주차장 22	A=1,615㎡	
공 원	소공원 3	A=1,475㎡	
녹 지	경관녹지 2	A=8,995㎡	
	완충녹지 19	A=7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사천시장

2)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2016. 07. 28.

2) 준공예정일 ┌ 당초 : 2020. 12. 31.

└ 변경 : 2021. 0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사 천 시 공 보

제704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작성되는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1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 예시

구분	규제내용
산업시설용지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건폐율 이하	최저층수

250%이하	-
60%이하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없음

제4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①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3장 기타 기반시설용지

제1조(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 부지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소공원의 설치)

① 소공원의 공원시설은 전체부지의 20%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② 소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

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배치)

○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당해 용도를 위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기타 기반시설의 적용)

○ 기타 기반시설용지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공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②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제2조(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공고 제2020-1570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을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게 규정하고,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1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탁기간을 최초 3년, 2년 단위 연장에서 공란으로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음.

2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오기 규정 정정(안 제2조)

- 자원종사자 ⇒ 자원봉사자

○ 이용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단서)

-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673, FAX : 831- 601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0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계약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사천시장을 “갑”이라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소)를 “을”이라 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전부 또는 ○○○시설
2. 소 재 지 :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
3. 재산표시 : **부지　　평, 건평　　평**
   건물 구조형태 명기(비품목록은 별첨)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 및 일반인의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갑”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4.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5.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6.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기타)

1.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청소년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0 . . .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성 명(법인명): (인)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계약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사천시장을 “갑”이라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소)를 “을”이라 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전부 또는 ○○○시설
2. 소 재 지: 사천시 문선4길 23
3. 재산표시: **대지면적 ㎡, 연면적 ㎡**
   건물 구조형태 명기(비품목록은 별첨)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 및 일반인의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갑”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4.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5.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기타)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청소년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 . . .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성 명(법인명): (인)

관 련 법 규

□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자원종사자)”를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원종사자) ① ~ ② (생 략)	제2조(자원봉사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시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이용시간) ----------.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시설의 이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9조에 따른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각 시설물 및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